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197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원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4. 접수 제797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19. 10. 8.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식품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9. 10. 8.부터 2020. 10. 7.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을, 2019. 12. 11.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농산물 및 육가공품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D, 피보험자 주식회사 F,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9. 12. 2.부터 2020. 12. 1.까지로 정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른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4. 접수 제797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2. 1. 21. 및 2022.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2. 24. 주식회사 E에 30,078,255원을, 2022. 6. 2. 주식회사 F에 49,882,90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D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332070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8.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70,931원 및 그 중 97,733,470원에 2021. 11. 1.부터, 30,078,255원에 대하여 2022. 3. 27.부터, 49,882,905원에 대하여 2022. 7. 3.부터 각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1. 4.

확정되었다.

마. 원고 산하 강북신용지원단은 2021. 9.경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거래관계 소명 협조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였다. 피고의 부 G은 2021. 9. 6. 원고에게 'D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0. 5.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관계 소명 협조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명서를 발송한 2021. 9. 6. 무렵부터 1년이 지난 2023. 10. 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나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1. 9.경 피고에게 거래관계 소명 협조 요청 문건을 발송한 사실, 피고의 부 G은 2021. 9. 6. 원고에게 D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1. 9. 7.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내지 매도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2021. 9. 7.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3. 10. 5.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별지